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07

발의연월일: 2024. 11. 13.

발 의 자:전용기·정준호·전진숙

임광현 · 송옥주 · 박 정

박용갑 • 서영교 • 차지호

박홍근 · 임호선 · 안도걸

손명수 • 윤종군 • 안태준

박홍배 • 권향엽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AI를 창작에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AI를 이용한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여부, 저작권 귀속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권리자와 사용자의법적 책임 등이 불분명한 상황임.

특히, AI를 이용한 생성물이 인간의 창작물과 구분되지 않을 경우,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소비자가 AI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를 인간이 제작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저작물이 AI를 이용하여 제작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제7조의2 제1항)하고, 그 표시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저작물의 표시) ① 생성형 인공지능(글·소리·그림·영상 등의 결과물을 다양한 자율성의 수준에 서 생성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말한다)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 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해당 저작물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내용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저작물의 표시) ① 생성형 인공지능(글·소리·그림·영상 등의 결과물을 다양한 자율성의 수준에서 생성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말한다)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해당 저작물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내용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